

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(제8조의4제2항 관련)

1.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
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- 라.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마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바.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사.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외의 기관·단체에서 시행하는 80시간 이상의 정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조경·농업 또는 임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2. 시설 등의 기준

가. 지방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

- 1) 정원의 시설이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
- 2) 조직 및 인력이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것
 - 가)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
 - 나) 정원 전문관리인을 정원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둘 것
- 3)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·관리하고 있을 것

나.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

- 1)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시설이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민간정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
- 2) 정원 전문관리인을 1명 이상 둘 것(정원의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